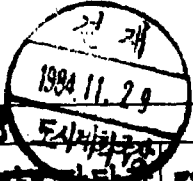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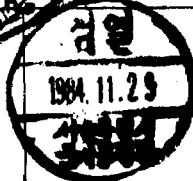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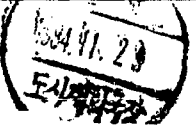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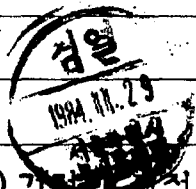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상442 - 64	(전화번호 365 )	진결 규정 국장	조 / 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4.11			
보존연한	영구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전경	  	
	시설계획과장	권		
	가로계획계장	최		
기안책임자	이상진	84.11	(최동순)	
경유수신참조	각안참조	고시제 700 호	신	제
제 목	도시계획시설(광장) 지적고시			
제안 내부결재				
1. 건설부 고시제60호(84.11.12)로 결정고시된 공양동광장 (A=36,000 <sup>m</sup> <sup>2</sup>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의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코자합니다.				
제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광장) 지적승인				
계획	1. 건설부 고시제60호(84.11.12)로 결정고시된 우미시 도시구역내 도시계획시설(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의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11.				
223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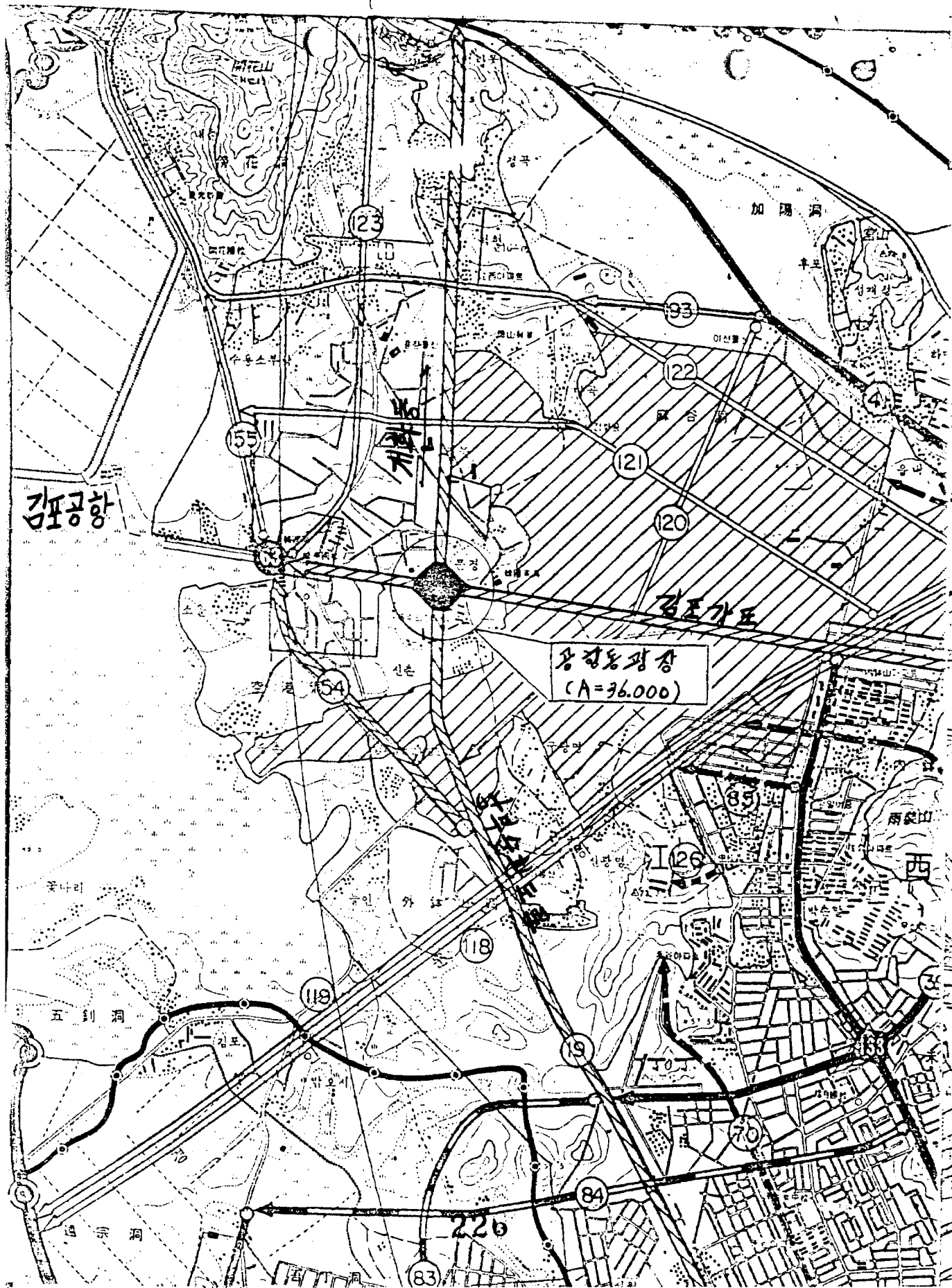
가. 광장 지적승인 조서					
구분	번호	광장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151	공항동광장	강서구공항동 36번지일대	36,000㎡	고용광장
나. 범침 도면포시와 같음(도면생략)					
제안					
수신	건설부장관				
제목	같음				
1. 건설부고시460호(84.11.12)로 결정고시된 우미시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광장)에 대하여 범침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1부및 도면부					
제안					
수신	총무처장관(시·공보관)				
제목	관(시)보 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관(시)보 게재의뢰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광장) 지적고시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제3조					
라. 게재내용 : 범침고시문					
첨부 고시문 사본2(1)부					
제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도시계획시설(광장) 광항동 지적고시 통보				
1. 우미시관내 강서구 공항동36번지일대에 위치한 공항동광장을 건설부에 시습442-401(84.8.13)대호로 결정요청한바 범침과 같이 결정및 지적승인되었기에 통보 하오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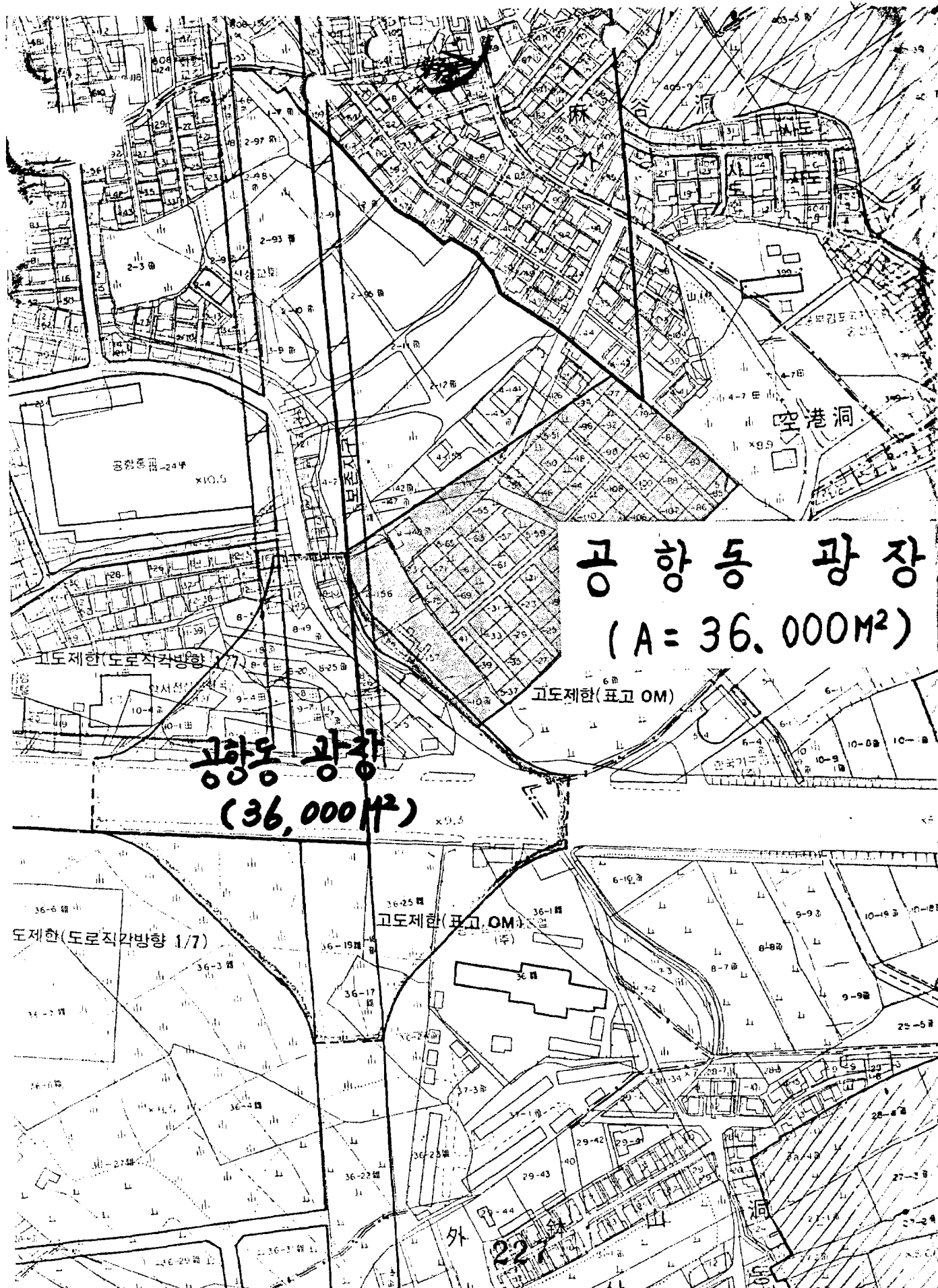


첨부 1. 결정및 지적고시 사본 각부

2. 도면부 끝.

수신처: 도로과, 강서구청(도시정비과)





공항동 광장  
 (A = 36,000M<sup>2</sup>)

공항동 광장  
 (36,000M<sup>2</sup>)

고도제한 (도로직각방향 1/7)

고도제한 (표고 OM)

外

22

동

사



년 설 부

도시 442- 20 P65

1984. 11. 12.

수신 서울특별시장

제목 서울도시계획시설(공장)결정

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결공
	출원	2011	32	재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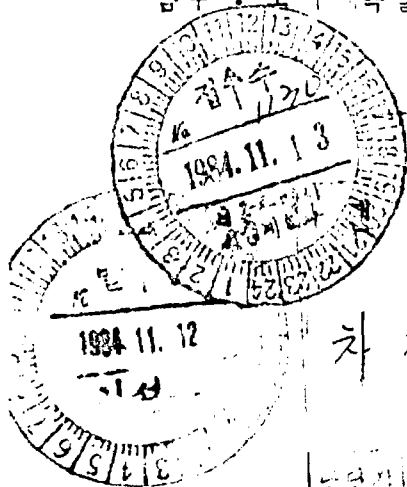
1. 시설 4-2-401(84.8.13) 및 시설 442-457(84.9.19)과 관련임.

2. 귀사에서 위대호로 신청한 서울도시계획시설(공장)결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결정도서 사본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 하였기 등본하니, 결정도서 사본을 귀시청,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할 것이며, 도시계획업무수행에 단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3. 지식사항

가급적 안전입체교차가 가능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축소안 구조동에서 김포공항쪽으로는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것.

첨부 : 도시계획결정도서 사본 1부. 끝



1984. 11월 13

부 장

차 관 이 관 영

229

일 짜 자



건설부고시 제 460 호

서울도시계획시설(공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결정도시 사본을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한다.

1984. 11. 12.

건설부장관

다 음

0. 공장결정도시

구분	공장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공향동공장	강서구 공향동 36번지 일대	36,000 <sup>㎡</sup>	교통공장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끝.



도시계획구역

麻谷洞

空港洞

공항동 광장  
(A = 36,000M<sup>2</sup>)

공항동 광장  
(36,000M<sup>2</sup>)

고도제한(표고 OM)

고도제한(도로직각방향 1/7)

고도제한(표고 OM)

外 鉢 山

外 鉢 山 洞